

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동의년월일 : 92년 5월 7일

(제78회임사회 제2차산업위원회)

수정동의자 : 우범성 위원

찬 성 자 : 유명희 위원

안재원 위원

1. 수정이유

- 영농기술이 점차 과학화 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과학영농 기술교육이 요구되며
- 농촌진흥원에서 영농기술과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원장과 협의 필요

2. 수정 주요골자

- 영농기술 교육 → 과학영농기술 교육
- 추가 삽입 : 과학영농 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은 농촌진흥원장과 협의

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2호 " 영농기술교육 " 을 " 과학영농기술교육 " 으로 한다.

안 제4조 제2항중 " 다만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
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" 를 " 다만 제3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업무에
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한다 " 로 한다.

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명 : <u>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</u></p> <p>제1조 (설치) <u>농촌근대화</u>의 역군이 될수있는 영농 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<u>충청북도 농민교육원</u> (이하"교육원"이라한다)을 둔다</p> <p>제3조 (업무) 1. 새마을교육 2. 영농기술교육 3. 농기계 훈련 4. 교육용 각종실습장운영 5. 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업무</p> <p>제4조 (원장) ①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 다만제3조 제3호 내지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</p>	<p>제명 : <u>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</u></p> <p>제1조 (설치) <u>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</u> <u>도민교육원 (이하"교육원"이라 한다)을 둔다</u></p> <p>제3조 (업무) 1. <u>도민정신교육</u> 2. 영농기술교육 3. <u>농기계 교육</u> 4. <u>기능훈련교육</u> 5. 기타 시책상 필요한 업무</p> <p>제4조 (원장) ① ② 원장은 감독한다. <u>이하삭제</u></p>	<p>제명 :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조 (설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업무)(개정안과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<u>과학영농기술 교육</u>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 (원장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원장은..... 감독한다. <u>다만, 제3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한다</u></p>